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광주지방검찰청
공보담당관 인권보호관 이장우
전화 062-231-4332/팩스 062-231-4951

보도자료
2024. 7. 2.(화)

광주 도심 조폭 흥기난동 살인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(제11조 제2항 제1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**광주지검 반부패·강력수사부(부장검사 조정호)**는 오늘 광주 광산구 소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'불법 보도방 근절' 시위를 준비하던 **피해자들을 회칼로 찔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가한 보도방 업자를 구속기소**하였음
- 수사결과, 살인을 저지른 **A**는 '○○파' 출신 조직폭력배로서, 유흥업소 밀집지역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**해결사** 역할을 자처하며 장기간 해당 지역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입 등을 통제하여 왔으나,
 - ① **피해자 B**가 보도방 업자인 **피해자 C** 등과 함께 해당 지역의 기존 보도방 업자, 유흥업소 업주들을 신고하거나 집회 등으로 압박하고, ② 집회 장소에서 **A**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등 무시하였으며, ③ **A**를 지역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자,
 - **A**는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, 다수의 인파가 운집해 있는 장소에서 집회 준비 중이던 **B**를 회칼로 찔러 살해하고, **C**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중상을 입히는 데 그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음
- 사건발생 직후, 초동단계부터 **검찰과 경찰은 '수사실무협의회'를 개최**하여 살인사건 자체는 물론, 사건의 발단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에서의 불법과 그 배후에 관하여 철저히 수사하기로 협의하였고,
 - 경찰은 갈등의 배경이 된 보도방 업자 **D**를 성매매알선등 행위로 구속하는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으며,
 - 검찰은 **A**의 보복 목적 및 살인 범의를 규명하여 가중처벌 조항인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음
- 향후 검.경은 적극 협력하여 불법 보도방 및 배후세력을 수사하고,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
I

관련자

- 피고인 A(57세, '○○파' 조직원, 보도방 운영)
- 피해자 B(44세, 사망, 무직)
- 피해자 C(46세, 중상, 보도방 운영)

▶ A가 가입한 '○○파'는 검찰이 주시·관찰하고 있는 조직이나, 폭력행위처벌법상 '범죄단체' 혐의로 의율된 바는 없음

II

공소사실 요지

- '24. 6. 7. 19:30경 광주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, ① 피해자 B 등이 지역 보도방 업자 D 등을 성매매알선 혐의 등으로 신고하고, ② 피해자들이 A를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고, ③ 장기간 A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, 미리 준비한 회칼(총 길이 30cm, 칼날 길이 17cm)로 집회 준비 중이던 피해자 B의 허벅지, 종아리를 2회 찔러 우측대퇴동맥손상으로 살해하고, 피해자 C의 허벅지, 엉덩이를 3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살인등), 살인미수]

『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』

제5조의9(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)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·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, 진술,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「형법」 제250조 제1항(살인)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고소·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, 진술,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·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·증언·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'20. 11.경부터 '24. 6. 초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함 [직업안정법위반]

III

주요 수사 경과

- '24. 6. 7. 사건 발생 및 A 현행범인 체포
- '24. 6. 8. 광주지검, 검사 직접검시 후 부검 지휘 및 구속영장 청구
 - ▶ '24. 6. 9. 광주지검 반부패·강력수사부 소속 검사가 직접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여, '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증거인멸, 도망의 염려가 크고 배후세력 규명 등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'는 의견 적극 개진, 법원 영장 발부
- '24. 6. 10. 검찰총장, 광주지검 검사장에게 엄정 대응 지시
 - ▶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살인사건 자체는 물론 유흥업소 이권다툼 과정에서의 불법과 그 배후의 폭력조직 개입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 등 지시
- '24. 6. 11. 검·경 수사실무협의회 개최
- '24. 6. 14. 사건 구속송치 및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
- '24. 6. 18. 피고인 주거지 등 압수수색
- '24. 6. 19.~21. 사건관계자들 조사, 서울대 법의학교수 자문
- '24. 6. 24. A 직업안정법위반 추가입건
- '24. 6. 27. 광주광산경찰서, 사건의 발단이 된 불법 보도방 운영 및 성매매알선 유흥업소 업주 D* 구속**
 - * D는 사망한 피해자 B의 처가 광주광산경찰서에 불법 보도방 운영 및 성매매알선 등으로 고발한 유흥업소 업주로,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가 지역 내 보도방 업자들을 상대로 D의 변호사비용을 모금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B와 갈등을 빚음
 - ** '24. 6. 27. 광주지검 반부패·강력수사부 소속 검사가 직접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여, 구속수사 필요성에 관한 의견 적극 개진
- '24. 6. 28. 대검 과학수사부, CCTV 영상 화질개선 및 정밀분석
- '24. 7. 2. A 구속기소

IV

수사결과

▣ 사건의 발단 및 배경

- 피고인 A는 폭력조직인 'OO파' 직원으로, 약 10여년 전부터 광주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소위 '해결사' 역할을 맡아 신규 보도방 업자의 업계 진입을 통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왔음
- '22.경부터 피해자 B,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C가 ① A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보도방 업계에서 내쫓으려 하고, ② 다른 경쟁 보도방 업자를 성매매알선 혐의 등으로 신고하고, ③ A를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·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*고 경고하며 피고인 A와 갈등을 키워왔음

* '22. 3.경까지, 해당 지역 보도방 업계에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흥업소와 유흥종사자들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영업용 '콜폰'을 기존 업자로부터 300만 원에 구입하고, 피고인 A의 승낙을 별도로 받아야 했으며, 영업을 그만둘 때 새로운 '콜폰' 양수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피고인 A에게 콜폰을 반납하고 3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, 이때 피고인 A가 강제로 다른 보도방 업자들로부터 300만 원을 걷고(갈취), 영업을 그만두는 업자에게 그 돈을 전달하지 않은 채 착복하였다(횡령)는 주장임

- 한편 해당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'상가번영회'를 조직하여 유흥接客원을 직접 고용하며 유흥업소 간에 인력을 공유하려 하자,
 - 보도방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피해자 C는 '24. 6. 6.경 '상가번영회' 회장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입구에서 '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' 등을 내세워 집회·시위를 개최하였고,

-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A의 승합차를 보고 확성기를 이용해 조롱하였으며, '24. 6. 7. 01:14경 피고인 A에게 전화로 '보도방 업자들 갈취한 사건으로 경찰청에 들어가 신고하겠다'는 취지로 말하였음
- 이에 피고인 A는 범행을 결의하고, '24. 6. 7. 16:18경 회칼을 구입한 뒤, 같은 날 19:30경 유흥업소 밀집지역 중심가에서 집회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 B와 피해자 C를 순차 칼로 수회 찌른 것임

▣ 엄정한 보완수사로 보복 목적 및 살인 범의 입증

- 사건 발생 직후 광주지검은 반부패·강력수사부장과 검사 2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, A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,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,
- 사건 송치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한 배후 폭력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A가 조직폭력배였음을 확인하였으며,
- 송치 후 A의 휴대전화 추가 포렌식, 주거지 압수수색, 계좌추적, CCTV 영상 화질 개선, 서울대법의학 교수 자문, 폭넓은 사건 관계인 조사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였음
- 특히 A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,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A의 살인 범의뿐만 아니라 그 동기에 보복 목적까지 포함되어 있었음을 밝혀 형법보다 중한 특가법을 적용하였음

▣ 검·경 협력수사를 통해 사건의 발단이 된 불법 보도방 업자 엄단

- 사건 발생 직후 광주지검, 광주경찰청, 광주광산경찰서는 '수사 실무협의회'를 개최하여, 살인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의 발단 및 배경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에서의 불법과 그 배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협의하였고,

- 광주광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해당 지역 불법 보도방 및 유흥업소 업주 D를 철저히 신속히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, 광주지검 반부패·강력수사부 검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직접 출석, 의견을 진술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음
- 그 외에도 사건 이후 광주지검에서 보도방 업자 14명을 직업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하였고, 경찰에서 광주 지역 보도방 업자 및 유흥업소 업주 등 27명 입건, 수사 중임

▣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 및 이권에 개입한 조폭 엄정 대응

- 피고인 A의 불법 보도방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나 성매매 알선업주 D의 범죄수익 규모를 철저히 파악하여 환수하는 등 범죄의 유인을 원천 차단할 예정임
- 사건 수사과정에서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유흥업소의 이권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였는바, 이들에 대한 검·경의 수사 및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조직 활동 및 세력을 근절할 것임

V 향후 계획

-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도 경찰과 적극 협력하여, 유흥가 이권 다툼의 근원인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·단속을 강화하고, 조폭 등 배후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,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등으로 이와 같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

[별첨 : 범행 관련 사진 및 동영상]

압수된 흉기 사진



범행장면 CCTV 영상



범행영상 - 수정.
mp4

[파일 별도 송부]